#### ■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대비표

[개정시행일: 2024년 4월 1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적용]

[세 6시경찰 · 2024년 4월 7월, 기본 기업 본급에 대한 년7	<sup>]</sup>	T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생략>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좌동>	
부 칙	부 칙	
<b>제1조(시행일)</b> 이 계약서는 <u>2023년 3월 31일</u> 부터 시행합니다.	<b>제1조(시행일)</b> 이 계약서는 <u>2024년 4월 1일</u> 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일 명시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제2조(경과조치) 시 시행일 전에 체결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의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용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단, 2024년 4월 1일 개정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시행에 따른 수수료 변경사항의 경우, 시행일부터 변경된 수수료할인 제도를 적용합니다.	본 개정에 따
[별지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별지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THAT THOSE AREA		

### 제1조~제2조 <생략>

## 제3조(수수료의 **징수**)

① 제2조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며 퇴직연금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1~8. <생략>

9.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4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설>

대상	판단기준	
<u>(예비)사회</u> <u>적기업</u>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증을 받 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 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 을 확인가능할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 방자지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 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 업	
사회복지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 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 늉할 것)	

#### 제1조~제2조 <좌동> 제3조(수수료의 징수)

① 제2조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며 퇴직연금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1~8. <좌동>

9.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mark>9.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mark>

사용자가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그 날부 2024년 1월 고용노동부 수 중 가장 낮은 기준인 연 0.07%를 적용하며, 그 외 할인 대 상의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지침에 따른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이 때 제4호에 의한 계약 경과 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하며, 인허가가 취소된 연 혜택 반영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은행과 운용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이 이 할인 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상 사회적기업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없이 2024

년 4월 1일부터 운용관리수수료율 연 0.07%를 적용합니다.			
대상	판단기준		
사회적기 업, 예비사 <u>회적기업</u>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증을 받 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 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 을 확인가능할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 방자지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 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 업		
사회복지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 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 늉할 것)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 복지시설로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증 을 교부받은 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에 따라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사회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장기요양기 시설 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0 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 스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언어발달서비 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 복지시설로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증 을 교부받은 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에 따라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 시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또 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언어발달서비스 제 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영유아보욕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원,「아 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 비스 제공기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원,「아 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 비스 제광기관	2024년 1월
	10.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 은행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그 날부터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4호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하되, 제9호에 의한 공익적 목적에 따른 기업 및단체에 적용되는 할인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할인을 적용 받는 사용자는 대기업으로 전환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유예기간이 중료되는 경우 또는 기타 기업형태 변경이 있는 경우 은행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은행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은행과 운용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중소기업이 이 할인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상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없이 2024년 4월 1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② <좌동> 제4조 <좌동> [별지2]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중소기업 감면 혜택 반영
제1조~제4조 <생략> 제5조(교육내용) ① 사용자가 은행에 위탁할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9. <생략> 10.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현재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다만, 재정안정화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상 황 등을 포함 11~13. <생략> ② 제1항에서 정한 교육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조~제4조 <좌동> 제5조(교육내용) ① 사용자가 은행에 위탁할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9. <좌동> 10.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현재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다만,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분 납입 이행 상황 11~13. <좌동>	

####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대비표

[개정시행일 : 2024년 4월 1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생략>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좌동>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u>2023년 3월 31일</u> 부터 시행합니다. <u>다만, 2022년 4</u> 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합 니다.	<b>제1조(시행일)</b> 이 계약서는 <u>2024년 4월 1일</u> 부터 시행합니다. <u>&lt;삭제&gt;</u>	개정일 명시			
시행일 전에 체결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용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ᆸᅰᅒᅅᇚ			

#### [별지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 제1조 <생략> 제2조(수수료의 징수)

① <생략>

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략>

<u>1의2. <신설></u>

#### 2~6. <생략>

7.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중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제1 <u>호 내지 제2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u>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3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 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온 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 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설>

대상	판단기준
(예비)사회 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등에 의해 고용노동 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증 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 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 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지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 기업

#### [별지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 제1조 <좌동> 제2조(수수료의 징수)

변경된 수수료 할인 제도를 적용합니다

① <작동>

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좌동>

<u>제1호</u>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u>운용관리</u> 및 2024년 <u>자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u>고용노동부 수 수수료 계산기간동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수료 부과기준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중권(단, 운용관리계약서 지침에 제7조제2항8호에 따른 국내 상장증권예탁증권(ETF)제외)에 업무수행 비용 대한 신탁재산평가액 평균잔액이 전체평균잔액의 70%을 고려한 감 이상일 경우 해당 평균잔액은 수수료 산출시 제외합니다.

2~6. <좌동>

7.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중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그 날부 2024년 <u>터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가장 낮은 </u>고용노동부 수 <u>수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u> 50%의 할인율을 적용 수료 부과기준 하며, 제3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지침에 여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사회적기업 혜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택 반영 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

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del>인</del>행 과 자산관리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이 이 할 . 인 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상 사회 1일부터 즉시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대상	판단기준
<u>사회적기업,</u>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동
<u>예비적사회</u>	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중
<u>적기업</u>	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
및 사회적	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
협동조합	합임을 확인가늉할 것)
TI 0 7101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마을기업	지방자지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
	기업

<u>부속협정서 시행에 따른 수수료 변경사항의 경우, 시행일부터</u>른 예외 시행

따른

면 혜택 반영

명시

페이지 3 / 4

현 행			개 정 안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사회복지법 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 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할 것)		사회복지법 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 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할 것)	
사회복지시 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중을 교부받은 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언어발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사회복지시 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 또는 「노인장기요 양보험법」에 따라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언어발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이 집,「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 원,「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아 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이 집,「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 원,「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아 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u>8. &lt;신설&gt;</u>		8	판한 규정」저 기업이 은행어 날부터 제1호의 할인율을 율과 합산하으른 기업 및 단습니다. 사용기본법」제2조제:기타 기업형태여야 하며, 은지 않습니다. 관리신탁계약시행을 위해인서를 발급받	」상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비名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비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비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비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비자 제2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 적용하며, 제3호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 적용하며, 제3호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 전용하되, 제7호에 의한 공익적 목적에 따산체에 적용되는 할인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자는 대기업으로 전환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장에 따른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비 변경이 있는 경우 은행에 이를 즉시 통지하는 행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할인율을 적용하다, 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은행과 자신이 체결되어 있는 중소기업이 이 할인 제5고용노동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상 중소기업확보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빙서류4년 4월 1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교용노동부 수 구료 부과기준 지침에 따른 중소기업 혜택 반영

####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대비표

[개정시행일:2024년 4월 1일, 기존 가입 소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유 여부: 적유]

Ļ	게성지앵일 : 2024년 4월 1일, 기존 기업 존님에 대안 [	선경약판 식용 여부 : 식용]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생략>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좌동>	
	부 칙	부 칙	
		<b>제1조(시행일)</b> 이 계약서는 <u>2024년 4월 1일</u> 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일 명시
	시행일 전에 체결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의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체결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의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용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단, 2024 년 4 월 1 일 개정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시행에 따른 수수료 변경사항의 경우, 시행일부터 변경된 수수료 할인 제도를 적용합니다.	본 개정에 따

#### 제3조~제4조 <생략>

[별지1]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 제1조~제2조 <생략> 제3조(수수료의 징수)

① 제2조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며 퇴직연금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1~9. <생략>

10.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중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4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설>

대상	판단기준	
<u>(예비)사회</u> <u>적기업</u>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 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 중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 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마욜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지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 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 [별지1]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 제1조~제2조 <좌동> 제3조(수수료의 징수)

제3조~제4조 <좌동>

① 제2조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며 퇴직연금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1~9. <좌동>

10.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중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그 날부터 사회적기업과 예비적사회적기업의 경우 운용

운용 2024년

관리수수료율 중 가장 낮은 기준인 연 0.10%를 적용하다. 다. 그의 할인 대상의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이 때 제4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자회적기업 감적용하며,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은 한 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상사회적기업으로 확인되는 경우 중빙서류 제출없이 2024년 4월 1일부터 운용관리수수료율 연 0.10%를 적용합니

<u>다.</u>	
대상	판단기준
사회적기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
업, 예비사	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
<u>회적기업</u>	즁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및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
협동조합	동조합임을 확인가늉할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지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
	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인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할 것)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 등기된 인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할 것)	
작인가능알 것)  사회복지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설	사회복지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설 사회복지시설로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 또는 「노인장 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제 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또는 지자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 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 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 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원,「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 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11, <신설>	11.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 은행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그 날부터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4호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하되, 제10호에의한 공익적 목적에 따른 기업 및 단체에 적용되는 할인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대기업으로전환 등을 통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기타 기업형태 변경이 있는 경우 은행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은행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은행과 운용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중소기업이 이 할인 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상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빙서류 제출없이 2024년 4월 1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수료 부과기준 지침에 따른 중소기업 감면 혜택 반영
12. <신설> ② <생략> 제4조 <생략>	계약서 제11조에 따른 부담금 통지와 납입을 완료한 건, 계약서 제16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완료한 건 중 전자 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완료한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이 때 제4호의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할인과 중복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좌동> 제4조 <좌동>	2024년 1월 고용노동부 수 수료 부과기준 지침에 따른 업무수행 비용 을 고려한 감 면 혜택 반영
[별지2]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생략>	[별지2]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좌동>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대비표

[개정시행일: 2024년 4월 1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번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생략>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좌동>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u>다만, 2022년</u>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 여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합니다.	<b>제1조(시행일)</b> 이 계약서는 <u>2024년 4월 1일</u> 부터 시행합니다. <u>&lt;삭제&gt;</u>	개정일 명시
시행일 전에 체결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용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단, 2024 년 4 월 1 일 개정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시행에 따른 수수료 변경사항의 경우, 시행일부터	
[변지1] 화정기여형티지여근 자사과리시탁계약 브소형정서	[벽지1] 할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사관리시탈계약 부속현정서	

#### [멸시1] 왁성기여영퇴식연금 사산관리신탁계약 무속엽성서

#### 제1조 <생략> 제2조(수수료의 징수)

- ① <생략>
- 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7. <생략>
- 8.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8.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 당 사용자가 은행에 중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 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3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 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 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 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설>

대상	판단기준
<u>(예비)사회</u> <u>적기업</u>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 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 중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 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지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 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사회복지법 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할 것)
사회복지시 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중을 교부받은 시설 또는 「노인장

#### | [열시1] 왁싱기어영퇴직언금 시산판리신탁계약 무쪽엽싱서

#### 제1조 <좌동> 제2조(수수료의 징수)

- ① <좌동>
- 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7. <좌동>

당 사용자가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그 날부터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2024년 가장 낮은 수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50%의 고용노동부 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3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수료 부과기준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지침에 따른 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사회적기업 혜 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 택 반영 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은행과 자산관리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이 이 할인 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상 사회적기업으로 확인되

1월

는 경우 즁빙서류 제출없이 2024년 4월 1일부터 즉시 할

9	<u> 인율을 적용합</u>	<u> -  다.</u>
	대상	판단기준
	<u>사회적기</u> 업, 예비적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등에 의해 고용노 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중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 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지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 을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 한 자활기업
	사회복지법 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할 것)
	사회복지시 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쥯을 교부받은 시설 또는「노인장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보육시설 9. <신설>	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소재지를 판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또는지자체 등으로부터 언어발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유치원,「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이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9	에 관한 규정은 중소기업에 된 경우 그 대수료에 대하여 경과년수에 대하여 경과년수에 대한 중복하여 전환 등을 통예기간이 중되는 경우 유한 지를 받은 보 2024년 1월 체결되어 있는 고용노동부에 급받은 것으로	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소재지를 판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 지원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언어발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성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시장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시장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시장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시장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 사용날부터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산관리 여 5%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3호 계약 다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하되, 제8호여 목적에 따른 기업 및 단체에 적용되는 할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대기업으로 한 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위로 보는 경우 또는 기타 기업형태 변경이 있어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은행은 등 보는 기타 기업형태 변경이 있어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은행은 등 조기업이 이 할인 제도 시행을 위한 세 제공받은 자료상 중소기업확인서를 별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 4월 1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수료 부과기준 지침에 따른 중소기업 혜택 반영

# ■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대비표 [개정시행일: 2024년 4월 1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적용]

<u> </u>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생략>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좌동>	
부 칙	부 칙	
<b>제1조 (시행일)</b> 이 계약서는 <u>2023년 3월 31일</u> 부터 시행합니다.	<b>제1조(시행일)</b> 이 계약서는 <u>2024년 4월 1일</u> 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일 명시
	제2조(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체결한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의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용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단, 2024 년 4 월 1 일 개정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시행에 따른 수수료 변경사항의 경우, 시행일부터 변경된 수수료 할인 제도를 적용합니다.	본 개정에 따른
제3조~제4조 <생략>	제3조~제4조 <좌동>	
[별지1]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별지1]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다만,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며	제1조~제2조 <좌동> 제3조(수수료의 정수) ① 제2조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며 퇴직연금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할수 있습니다. 1~9. <좌동> 10.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 은행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확인된 날부터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4호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제10호에 의한 공익적 목적에 따른 기업 및 단체에 적용되는할인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대기업으로 전환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에 따른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기타 기업형태 변경이있는 경우 은행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은행은통지를받은 날부터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할인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2024년 1월 고 용노동부 수수 료 부과기준지 침에 따른 중소 기업 감면 혜택
11. <신설> ② <생략> 제4조 <생략>	일인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2024년 1월 31월 기준으로 인행과 운용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중소기업이 이 할인 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받은 자료 를 기준으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빙서류 제출없이 2024년 4월 1 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1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용관리수수료 계산기간 중에 계약서 제11조에 따른 부담금 통지와 납입을 완료한 건, 계약서 제16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완료한 건 중 전 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완료한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 수료에 대하여 5%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이 때 제4호의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제10호에 따른 할인과 중복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좌동> 제4조 <좌동>	용노동부 수수 료 부과기준지 침에 따른 업 무수행 비용을 고려한 감면 예
[별지2]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생략>	[별지2]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좌동>	

# ■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대비표 [개정시행일: 2024년 4월 1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적용]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생략>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좌동>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u>다만</u> , 2022 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소급 하여 시행합니다.	<b>제1조(시행일)</b> 이 계약서는 <u>2024년 4월 1일</u> 부터 시행합니다. <u>&lt;삭제&gt;</u>	개정일 명시
	제 2 조(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체결한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용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단, 2024 년 4 월 1 일 개정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시행에 따른 수수료 변경사항의 경우, 시행일부터 변경된 수수료 할인 제도를 적용합니다.	본 개정에 따 른 예외 시행
[별지1]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별지1]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제1조 <생략> 제2조(수수료의 정수) ① <생략> 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7. <생략> 8. <신설>	제1조 <좌동> 제2조(수수료의 정수) ① <좌동> 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7. <좌동> 8.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 은행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3호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하되, 제8호에 의한 공익적 목적에 따른 기업 및 단체에 적용되는 할인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대기업으로 전환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기타 기업형태 변경이 있는 경우 은행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은행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은행과 자산관리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중소기업이 이 할인 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상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빙서류 제출없이 2024년 4월 1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고용노동부 수 수료 부과기준 지침에 따른 중소기업 혜택 반영

####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대비표

[개정시행일 : 2024년 4월 1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1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생략>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좌동>	
부 칙	부 칙	
	<b>제1조(시행일)</b> 이 계약서는 <u>2024년 4월 1일</u> 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일 명시
지행일 전에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의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제3조 <생략>	제3조 <좌동>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 제1조~제2조 <생략> 제3조(수수료의 징수)

다만,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다만,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퇴직연금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할 수||퇴직연금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1~9. <생략>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중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 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4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 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 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 설>

대상	판단기준
<u>(예비)사회</u>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
<u>적기업</u>	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
	즁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및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
협동조합	동조합임을 확인가늉할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지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
	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별지1] 개인명퇴직연금(기업명)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 제1조~제2조 <좌동> 제3조(수수료의 징수)

① 제2조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① 제2조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부담하며 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며 있습니다.

1~9. <좌동>

10.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욜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10.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욜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중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 그 날부터 사회적기업과 예비적사회적기업의 경우 운용 2024년 관리수수료율 중 가장 낮은 기준인 연 0.15%를 적용하<sup>|</sup>고용노동부 수 며, 그 외 할인 대상의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 수료 부과기준 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이 때 지침에 제4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사회적기업 감 적용하며,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면 혜택 반영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 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

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은행과 운용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이 이 할인 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상 사회적기업으로 확인되는 경우 즁빙서류 제출없이 2024 년 4월 1일부터 운용관리수수료율 연 0.15%를 적용합니

다.

대상	판단기준
사회적기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
업, 예비사	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
<u>회적기업</u>	즁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및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
협동조합	동조합임을 확인가늉할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지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
	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사회복지법 인 사회복지시 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 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할 것)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신고 중을 교부받은 시설 또는 「노인장 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 정한 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 지원	사회복지 인 사회복지 설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할 것)	
보육시설	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 기관,「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제 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또는 지자 체 등으로부터 언어발달서비스 제공기 관으로 지정된 기관	보육시설	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활동지 원기관,「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 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또는 지 자체 등으로부터 언어발달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u>11. &lt;신설&gt;</u>	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 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 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독	
12. <신설>		받은 중소: 인된 경우 료에 대하 과년수에 의한 공약: 인과 중복! 전환 등을 예기간이 는 경우 은 를 받은 늘 년 1월 31 있는 중소 에서 제광 로 확인되 4월 1일부	규정」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 기업이 은행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 역 그 날부터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 여 5%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4호 계약 대 다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하되, 제10호인적 목적에 따른 기업 및 단체에 적용되는 함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대기업으로 통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에 따른 대 중료되는 경우 또는 기타 기업형태 변경이 연한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은행은통한 학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은행은통한 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202일 기준으로 은행과 운용관리계약이 체결되었기업이 이 할인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노동 한은 자료상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것 같은 자료상 중소기업확인서를 기업이 2024년 등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교육노동부 수 고용노동부 기준 고유로 부과 따른 지수지 전에 감면 이 감면 반영 이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계약서 제1: 계약서 제1: 금융(인터넷 를 초과하는 대하여 5%의 과년수에 따	I조에 따른 부담금 통지와 납입을 완료한 건 5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완료한 건 중 전 ,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완료한 비율이 50 ·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 리 할인율을 적용하며, 이 때 제4호의 계약 <sup>2</sup> 나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제1 1호에 따른 할인과 중복적용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고용노동부 수 수료 부과기준 제침에 따른 업무수행 비용
[별지2] 개인형	티직연금(기업형) 교육위탁계약서 <생략>	[별지2] 개인	형퇴직연금(기업형) 교육위탁계약서 <좌동>	

### ■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대비표

[개정시행일 : 2024년 4월 1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박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생략>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좌동>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u>다만, 2022년</u>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 여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합니다.	<b>제1조(시행일)</b> 이 계약서는 <u>2024년 4월 1일</u> 부터 시행합니다. <u>&lt;삭제&gt;</u>	개정일 명시
	제2조(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u>단, 2024 년 4 월</u> 1 일 개정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시행에 따른 수수료 변경사항의 경우, 시행일부터 변경된 수수료 할인 제도를 적용합니다	른 예외 시행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제1조 <생략> 제2조(수수료의 정수) ① <생략>	제1조 <좌동> 제2조(수수료의 정수) ① <생략>	
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9. <생략>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 9.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 사용자가 은행에 중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

인율을 적용하며, 제3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 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설>

대상	판단기준
<u>(예비)사회</u> <u>적기업</u>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 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중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 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지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 을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 한 자활기업
사회복지법 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할 것)

1~8. <좌동>

당 사용자가 은행에 중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그 날부터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2024년 <u>가장 낮은 수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u> 50%의 고용노동부 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3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수료 부과기준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지침에 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사회적기업 혜 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 택 반영

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은행과 자산관리신탁계약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상 사회적기업으로 확인되 는 경우 즁빙서류 제출없이 2024년 4월 1일부터 즉시 할

<u>인율을 적용합</u>	<u> </u>
대상	판단기준
사회적기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
<u>업, 예비적</u>	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u>사회적기업</u>	인즁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및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
협동조합	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지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
	<u>용</u> 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
	한 자활기업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인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늉할 것)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사회복지시	사회복지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성 사회복지시설로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 또는「노인장 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활동 지원기관,「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 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언어발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 이집,「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원,「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인어들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10.「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된 경우 그 날부터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산관리수수로에 대하여 5%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4호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하되, 제9호에 의한 공식적 목적에 따른 기업 및 단체에 적용되는 할인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대기업으로 전환 등을 통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기타 기업형태 변경이 있는 경우 은행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은행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은행과 자산관리신탁계약이체결되어 있는 중소기업이 이 할인 제도 시행을 위해고용노동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상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병서류 제출없이 2024년 4월 1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2024년 1월 고용노동부 수 수료 부과기준 지침에 따른 장소기업 혜택 반영

# ■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대비표 [개정시행일: 2024년 4월 1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적용]

[개정시행일 : 2024년 4월 1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	안 변경약판 석용 여부 : 석용]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생략>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좌동>	
부 칙	부 칙	
<b>제1조(시행일)</b> 이 계약서는 <u>2023년 3월 31일</u> 부터 시행합니다.	<b>제1조(시행일)</b> 이 계약서는 <u>2024년 4월 1일</u> 부터 시행합니다. 7	개정일 명시
운용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 계약융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제 3 조제 1 항제 9 호로 계약내용의 경우,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수수료에 즉시 내용을 적용합니다.		본 개정에 따 를 예외 시행 경시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del>운용관</del> 리계약 부속협정서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제1조~제2조 <생략>	제1조~제2조 <좌동>	
제3조(수수료의 정수) ① 제2조의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1~1의2. <생략> 1의3. <신설>	제3조(수수료의 정수) ① 제2조의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1~1의2. <좌동> 1의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에 2 계약서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초저 고	
	위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외한 개별 사전지정운용방법으 로 운용되는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이하 "사전지정 지	수료 부과기준
	<u>운용방법별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이라 합니다.)이 원</u>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 분	오용손익을 구
	액에 운용관리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사전지정운용 특 방법별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에 대해서는 사전지정	
	<u>운용방법별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에 운용손익수수료</u> 율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단, 2024년 4월 1일 이전 체결한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의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 별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은 수수료 할인 제도 시행	
2. <생략>	일인 2024년 4월 1일부터 산정합니다. 2. <좌동>	
	율은 해 <mark>3. 제1호<u>, 제1의2호, 제1의3호</u>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운용</mark> 인	일 <del>용</del> 조문 추가
자의 별도 부담으로 형성된 적립금을 합산한 적립금 자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이때, 각각의 적립금이	평가액 로 형성된 적립금과 가입자의 별도 부담으로 형성된 적	
운용관리계약으로 나눠진 경우에도 적립금 자산평가액을 '여 해당 수간의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구간의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적립금자 퇴직재산으로 형성된 가입자의 별도 년 산평가액 적립금 수수료율(연) 으로 형성된 적 수수료율(연)		
1억원 미 0.25% 0.08%	1억원 0.25% 0.08%	
만 (전자금융(인터넷, 모 (전자금융(인터넷, 바일 등)을 이용하여 바일 등)을 이용하여 바일 등)을 이용하여 바일 등)을 이용하여 바일 등	하여 모바일 등)을 이용 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신규 계약한 3 0.15%) 0.03%)	경우 0.15%) 0.03%)	
1억원 이 0.20% 0.06%   0.06%   (전자금융(인터넷, 모 (전자금융(인터넷,		
바일 등)을 이용하여 바일 등)을 이용적 신규 계약한 경우 신규 계약한		
0.15%) 0.03%)	경우 0.15%) 0.03%) 다. 다 3의2. 제1의3호에 적용하는 운용손익수수료율은 가목의 기 2	2024년 1월
<u>만, 2019년 8월 30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2019</u>		1용노동부 수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30일 이후 도래하는 계약용당일부터 적용합니다.	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수료 계산기준일에 산정된 계약서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초저위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외한 개별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기 간수익률(이하 "사전지정운용방법별 수익률"이라 합니	지침에 따른 운용손익을 구
	다.)이 수수료 계산기준일에 확정된 다목의 기준지표를 상희하는 경우 기본수수와 손익수수료를 합산하여 부과 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별 수익률이 기준지표와 같은 경 우 기본수수료만 부과하며, 사전지정운용방법별 수익률	
	이 기준지표를 하회하는 경우 기본수수료에서 손익수수 료를 차감하여 부과합니다. 가. 기본수수료: 적립금의 운용성과에 상관없이 산정되 는 수수료로, 제3호에 따른 운용관리수수료율에 80%를	
	급하여 산정합니다. 나. 손익수수료 : 적립금의 운용성과에 따라 산정되는 수수료로, 제3호에 따른 운용관리수수료율에 20%를 곱 하여 산정합니다.	
	다. 기준지표 : 운용손익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치로서 개별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하되, 해당 값이 음수로 산정되는 경우에도 은행은 0을 초과한 값을 적용합니다.	
	개별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기준지표 = (최근 공시된 하나 은행 초저위험 사전지정운용방법 공시수익률 X 사전지 정운용방법의 주식 외 비중) + (위험자산 기준수익률 X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주식 비중)	
	(1) "최근 공시된 하나은행 초저위험 사전지정운용방법 공시수익률"이란 매분기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공시되는 하나은행 초저위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12개월 수익률을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의미하며, 매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산정하여 익익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2) "위험자산 기준수익률"이란 KOSPI 지수의 과거 10년 기간동안 매일 3년의 수익률을 산출, 이 3년	
	수익률 표본의 평균값을 기하평균하여 연환산한 값을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의미하며, 위험자산 기준수익률은 매 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재산정하여, 익익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3) 개별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주식 외 비중 및 주식 비중은 정수로 산정하며 매 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재산정하여 익익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4) 산정된 개별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기준지표는	
	하나은행 퇴직연금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합니다. 라. 사전지정운용방법별 수익률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수료 계산기간에 대하여 다음의 기간수익률을 연환산하여 적용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합니다. 단, 2024년 4월 1일 이전 체결한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의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별 수익률 산정시 수수료 할인 제도	
	시행일인 2024년 4월 1일부터 산정합니다. [수수료 계산기준일 전일까지 사전지정운용방법별 적립금 자산평가액 + 수수료 계산기간 중 발생한 지급액(중도인출, 연금지급 등)]/[계약일 또는 자리로	
	직전         계산         기준일의         사전지정운용방법별         적립금           자산평가액 + 부담금납입액]-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비성과구간         1억미만         1억이상         1억미만         1억이상           초과         0.25%         0.20%         0.08%         0.06%           성과(A)         (0.15%)         (0.15%)         (0.03%)         (0.03%)	
	<u> </u>	

현 행		7	개 정	안		개정사유
9. 가입자가 계약서 제15조에 따라 연금지급을 신청하여 1회 이상 연금으로 급여를 수령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 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단, 제2호에 따라 계약서 제15조에 의한 급여지급(일시금 지급에 한함), 계약서 제16조에 의한 중도 인출,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해지,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계약이전으로 인하여 운용관리수수료를 장수하는 경우에는 할인 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0. <생략> ② <생략> 지4~5조 <생략>	히 이사 여그	계약서 제1 금으로 급여 리수수료를	15조에 따리 르 스력하 2	연금지급을 경으에도 제	0.048% (0.024%) 0.036% (0.018%) 을 신청하여 1 1호 내지 제3	2024년 1월 고용노동부 수 수료 부과기준 지침에 따른 업무구분에 대 한 할인을 차 등없이 계약이 전, 중도해지 등에도 적용

# ■ 개인영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대비표

[개정시행일 : 2024년 4월 1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게·8시생일·2024년 4월 1일, 기존 기업 존림에 대인 년	20위한 계명 서구·계명]	T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생략>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좌동>	
부 칙	부 칙	
	<b>제1조(시행일)</b> 이 계약서는 <u>2024년 4월 1일</u> 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일 명시
지행일 전에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 약의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자산관리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 변경과	본 개정에 따 른 예외 시행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제2조(수수료의 정수) ① <생략> 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8. <생략> 9. 계약서 제14조에 따라 신탁금이 1회 이상 연금의 형태로		
지급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단, 제2호에 따라 계약서 제15조에 의한 급여지급(일시금 지급에 한함), 계약서 제16조에 의한 중도인출,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해지,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계약이전으로 인하여 운용관리수수료를 장수하는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합니다. <u>&lt;삭제&gt;</u>	2024년 1월 고용노동부 수 수료 부과기준 지침에 따른 업무구분에 대 한 할인을 차
	10. <좌동> ③ <좌동>	등없이 계약이 전, 중도해지 등에도 적용